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3.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9.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2.)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전 의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 · 연구 · 진료 · 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

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천우정)

현행 법령에는 이미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도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법률 개정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령하에서도 대학병원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연구는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담당부처의 지도·감독 기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함으로써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경영에 있어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보임.

반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혁신 전략」에 따라 대학병원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비해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부의 개입 증가는 대학병원의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

음.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있는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 운영 논란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및 부실운영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즉, 공공의료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역량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대학병원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성과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상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고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능이 병존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것인지, 공공의료에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부는 동 법안은 복지부-교육부 협업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대통령 주재 회의, '23.10.19.)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관 부처의 이관에 동의하고 있음. 또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 원, '25)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 원, 25)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과 연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 발표한 투자·지원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동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는 기관인만큼 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우수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의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 수련 등 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전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공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에서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25.정부안 9,396억원)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등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의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국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국립대학병원 육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이관시 병원의 자율성 훼손, 연구역량 저하 등이 우려되며, 또한 병원 내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관 부처 이관에 따라 병원이 공공의료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시, 우수한 교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대학병원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소관 변경에 따른 효과와 지역의료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관 변경에 따른 교육·연구 역량 저하 우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관 변경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에게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 필수의료 발전을 위해 소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지만,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의 합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의료 강화, 국립대병원에 대해 지역의료 거점 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병원 이상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

점 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이행 필요함.

이에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